

[별 표] <신설 2005.12.31>

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(제92조의7제4항관련)

1. 가축별 기준면적

구 분	사 업	가 축 두 수	축사 및 부대시설		초지 또는 사료포		비 고
			축사 (제곱미터)	부대시설 (제곱미터)	초지 (헥타르)	사료포 (헥타르)	
1. 한우 (육우)	사육사업	1두당	7.5	5	0.5	0.25	말·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 육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.
2. 한우 (육우)	비육사업	1두당	7.5	5	0.2	0.1	
3. 유우	목장사업	1두당	11	7	0.5	0.25	
4. 양	목장사업	10두당	8	3	0.5	0.25	
5. 사슴	목장사업	10두당	66	16	0.5	0.25	
6. 토끼	사육사업	100두당	33	7	0.2	0.1	친칠라를 사 육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.
7. 돼지	양돈사업	5두당	50	13	—	—	개를 사육하 는 경우를 포 함한다.
8. 가금	양계사업	100수당	33	16	—	—	
9. 밍크	사육사업	5수당	7	7	—	—	여우를 사육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2. 가축두수

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.

가.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(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
나.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

다.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